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96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주영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6.
3. 회부연월일 : 2025.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인해, 디지털 역량은 이제 개인의 사회 참여 및 경제 활동의 필수 조건이 되었음.

공공 서비스, 금융, 교육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해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딥페이크 오디오를 30%도 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대응 능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특히, 국내 60대 이상의 경우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역량이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가 압도적임.

이에 우선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디지털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예산 확보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디지털 문해교육”이란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의 이해 및 분석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생 략) ③ (생 략) <u><신 설></u>	7. 디지털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사 <u> 항</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디지털 문해교육의 진흥)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u> <u>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u> <u>스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u> <u>력하여야 한다.</u>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u> <u>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u> <u>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디지털</u> <u>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u> <u>지원을 하여야 한다.</u>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u> <u>문해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u> <u>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u> ⑤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u> <u>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u> <u>관계 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와</u> <u>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u> <u>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⑥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u> <u>문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u> <u>고, 교육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u> <u>하여 그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u> <u>영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발의 배경 검토

- 최근 인공지능(AI), 모바일 기기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일상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음. 음식점,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 키오스크가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 분야 역시 창구 중심의 대면 거래에서 모바일·온라인 banking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임.

이와 같이, 사회 전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역량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과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서비스·공공 서비스·일상 소비 활동 등에서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일반 국민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최근 5개년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장애인	81.3	81.7	82.2	82.8	83.5
고령층	68.6	69.1	69.9	70.7	71.4
저소득층	95.1	95.4	95.6	96.1	96.5
농어민	77.3	78.1	78.9	79.5	80.0
평균	72.7	75.4	76.2	76.9	77.5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주: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설정한 상대지수
평균은 취약계층 인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평균

또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성인디지털문해능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1’의 성인은 전체의 8.2%(약 350만 명)로 나타났으며, ‘수준2’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약 25.9%로 나타나고 있음.

<디지털 문해능력 조사 결과>

구분	수준 정의	비율(%)(추정인구)	
수준 1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 부족,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 하는 수준	8.2% (3,505천명)	25.9%
수준 2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17.7% (7,587천명)	(11,093천 명)
수준 3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비판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21.4% (9,182천 명)	
수준 4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	52.8% (22,665천 명)	
총계		100.0% (42,940천 명)	

자료: 교육부,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 이에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디지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지원의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금융·공공·생활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참고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¹⁾는 학교등의 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등²⁾’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복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디지털 문해교육은 디지털 기술 및 기기 활용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반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접

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2. 제2조 제1호 라목의 교육기관 중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제2조 제1호 마목의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인 것으로 보이는 바, 별개의 개념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 디지털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지원근거 마련

- 안 제39조의3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디지털 문해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39조의3제6항은 디지털 문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행규정 형식으로 정하고 있음.
- 현재 디지털 문해교육에 관한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26년 예산 기준, 총 78억 8,400만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역사업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기반 구축에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문해교육 기반 구축 내역사업 외에도 한글햇살버스 등 디지털 문해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25년 기준 디지털 문해교육 관련 예산은 약 19억으로, 전체 문해교육 예산 대비 26%정도임. 최근 디지털 문해교육 수요 확대 등으로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 및 제2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준비 등을 위해 지원확대와 예산확보가 필요하므로, 지원근거와 예산확보 의무 근거 규정은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그러나, 현행 「평생교육법」의 입법형식을 보면 제16조³⁾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동법 제39조⁴⁾에서도 문해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디지털 문해교육에 관해서만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예산확보를 강행규정 형식으로 둘 경우에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3) 디지털 문해교육에 관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 관련

□ 안 제39조의3제4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별도의 기관을 두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3)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운영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4)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행법상의 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현행 「평생교육법」 제39조의2⁵⁾는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문해교육 역시 문해교육센터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감 등은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⁶⁾하고 있음.

<현행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19조⁷⁾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서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전문기관 지정 조항은 삭제하고 ‘디지털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참고자료1

7)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0.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그러나, 평생교육진흥원 하의 국가문해교육센터와 별도로 현행법에서는 시·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체계를 활용하여 일원화하여 운영할지, 혹은 디지털 문해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도(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감)에서 디지털 문해교육에 관해서는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 외에 단순한 수정의견으로,

첫째,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문구 수정이 필요함. 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정의규정을 수정하는 경우, ‘디지털 서비스’를 ‘디지털 기기 및 기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⁸⁾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 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데, 디지털 문해교육의 범위가 특정 기술에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을 입법취지에 따라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의 활용 능력’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에 따라 정의규정이 수정되는 경우, 체계 자구 측면에서 안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함께 수정하여야 함.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수정의견으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디지털 문해교육을 포함한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규정으로도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경직성 및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므로 안 제39조의3제3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

참고1**국가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 현황**

연번	구분	국가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
1	국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2	광역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문해교육센터)
3	광역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광역시 문해교육센터)
4	광역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대구광역시 문해교육센터)
5	광역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 문해교육센터)
6	광역시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광주광역시 문해교육센터)
7	광역시	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센터)
7	광역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광역시 문해교육센터)
8	광역시	울산연구원 평생교육연구실 (울산광역시 문해교육센터)
9	광역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문해교육센터)
10	광역시	강원인재원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
11	광역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 문해교육센터)
12	광역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 문해교육센터)
13	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
14	광역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 문해교육센터)
15	광역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 문해교육센터)
16	광역시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 문해교육센터)
17	광역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